공단보유특허권 처분 공고

대구환경공단 소속직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공단보유특허권(특허·디자인)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대구환경공단보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9일

대구환경공단이사장

1. 공단보유특허권의 정의

O 대구환경공단 소속직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대구환경공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·디자인권입니다.

2. 처분대상 공단보유특허권(처분종류 : 통상실시권 허락)

가. 공단보유특허권

구분	연번	발명의 명칭	등록번호	등록일자	처분종류
특허	1	하수슬러지 처리방법 및 이로부터생성된 탈수 케이크	10-0793850	′08.01.04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2	차량용 악취제거 약품분사장치 및 분사방법	10-0997652	′10.11.25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3	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를 구비한 음식쓰레기 수 거차량	10-1014265	′11.02.07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4	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구멍탄 제조방법	10-1049048	'11.07.07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5	탈황용기 및 이를 이용한 다단식 건식 탈황장치	10-1127570	′12.03.09	통상실시권 허락

구분	연번	발명의 명칭	등록번호	등록일자	처분종류
특허	6	유체를 이용한 이중 실링장치	10-1137543	'12.04.10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7	우수 유입 방지장치	10-1137544	'12.04.10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8	물벼룩의 네오네이트 분리장치	10-1216420	'12.12.21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9	우수유입 및 토사분리 장치	10-1313042	'13.09.24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0	밀폐공간 퇴적물의 가스측정장치	10-1313041	'13.09.24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1	다층 침전지	10-1373626	'14.03.26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2	가변형 스크린	10-1441121	'14.09.05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3	컨베이어 제진기	10-1564882	′15.10.26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4	자유 낙하식 교반장치	10-1564883	′15.10.26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5	슬러지 수집기 체인파단 검출장치	10-1564884	′15.10.26	통상실시권 허락
특허	16	액체 분배 장치	10-2025106	′19.09.19	통상실시권 허락
다자 인	17	전기차 충전소 캐노피	30-0894938	′17.02.13	통상실시권 허락

※ 특허내용 확인

- ① 특허정보검색서비스(www.kipris.or.kr)-등록번호(숫자만 입력)조회
- ② 특허로(www.patent.go.kr)-특허관리-특허보관함-사건번호검색(등록번호 숫자만 입력)-공보보기

나. 처분방법 : 수의계약

다. 처분범위(공통)

O 실시기간: 3년 이내

O 실시지역: 대한민국 전역

O 실시내용 : 처분대상 공단보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

○ 선정업체 : 대구환경공단이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

3. 신청방법

가. 기 간 : 3월 29일 ~ 9월 30일 [토요일, 공휴일은 익일 접수]

나. 방 법 : 우편 및 이메일 접수

○ 우편 : (42720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(대천동)

대구환경공단 운영지원처 특허권 처분담당자 앞

O 이메일 : kimjy517@dgeic.or.kr

다. 구비서류 : 수의계약신청서 1부(첨부서류 포함)

4. 신청자격

○ 공단보유특허권(특허·디자인)의 실시 가능업체(사업자등록업체)

5. 계약대상자 선정방법

- 가. 계약대상자는 대구환경공단이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.
- 나. 공단보유특허권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.
 - ※ 실시료 예정가격 =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×제품의 판매단가×점유율×기본율
 - 총판매예정수량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
 - 제품의 판매단가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
 - 점유율 :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
 - · 기본율: 기본 3%. 다만,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,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% 이상 4% 이하로 할 수 있음
- 다. 실시료의 견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, 실제 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.
- 라. 공공성·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마.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(1부), 사업자등록증 사본(1부), 인감증명서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공단보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, 대표자 이름, 주소, 연락처 등 일부 개

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.

6. 계약 및 실시료 정산(납부) 방법

가.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 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.

나. 계약내용

- 1) 실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2) 판매예정 수량은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수량으로 한다.
- 3)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 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.
- 4) 기본율은 기본 3%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 산정*한다.
 - * 다만,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,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%이상 4%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
- 다. 지정된 처분범위와 실시료를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대구환경공 단이 날인한 "공단보유특허권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(2부)"에 계약대 상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공단보유특허권을 실시 할 수 있다.

라. 정산내용

-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.
- ※ 실시료 산정 = 제품의 총판매수량×제품의 판매단가×점유율×기본율
 - · 총 판 매 수 량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
 - · 제품의 판매단가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
 - 점유율 :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
 - · 기본율 : 기본 3%(계약 체결시 확정)
- 2) 실시료 정산시 실시 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,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제출

- ▶ 총 매출액 확인서류: 재고자산수불부, 거래처별 납품내역서, 제품 판매현황자료, 회계장부, 매출원장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
- 마.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매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
7. 문의처

○ 기타 공단보유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 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구환경공단 운영지원처 사업운영팀 특허권 처분 담당자 (☎ 053-605-8035, 이메일 : kimjy517@dgeic.or.kr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